

# 네팔(Nepal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: 1962년(적립금고), 1994년(노령수당제도), 2011년(사회보장기금), 2017년(노동법)

## 2 제도형태

- 적립금고제도 및 사회부조제도
  - ※ 민족과 지리적 위치에 기초하여 네팔 국민에게 추가적 현금 급여 지급
  - ※ 2011년 법에 의해 노령, 장애, 실업, 그 외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제도를 관리하는 사회보장기금국 설립됨.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기금에 소득의 1% 납부하나,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았음. 가입자 및 사용자 기여금 재정 중 28.33%는 노령급여, 1.40%는 장애 및 산재급여에, 0.27%는 유족급여, 1%는 질병 및 모성급여에 조달됨

## 3 적용대상

- 적립금고
  - 당연적용 : 공무원, 군인 및 경찰 등을 포함한 공공 영역의 근로자, 견습 및 훈련생 등을 포함한 정규직 민간 영역 근로자
  - 임의적용 : 10인 이상 고용자가 있는 사업장
  - 적용제외 : 자영자
- 사회부조 : 네팔국민

## 4 재원조달

- 적립금고
  - 가입자 : 월 소득의 10%
  - 자영자 : 해당 없음
  - 사용자 : 월 임금지급총액의 10%(추가 임의보험료 납부 가능)
  - 정 부 : 없음
- 사회부조
  - 가입자, 자영자, 사용자 : 없음
  - 정 부 : 총 비용

## 5

#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 - 노령연금(적립금고) : 58세 또는 고용관계종료 시 가능
    - 연기연금 : 60세까지 연기될 수 있음
    - 대출제도 : 주택, 교육, 기타 비용에 대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 가능, 자격요건은 대출의 성격에 따라 상이
  - 노령수당(사회부조)
    - 70세 이상(달리트와 카르날리 지역 거주민의 경우 60세 이상)
- 장애급여
  - 장애보조금(적립금고) : 가입자의 부분 혹은 영구장애 시 지급
  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16세 이상이고 영구 또는 중증장애로 판정된 경우 지급
- 유족급여
  - 유족급여(적립금고) :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지정된 유족 또는 법적 상속자에게 지급
  - 유족보조금(적립금고) : 가입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
  - 유족수당(사회부조) : 60세 이상의 네팔 미망인으로 자산조사 요건(무소득, 가족지원 없음, 미망인으로서 유족연금수급자 아닌 자)을 충족할 경우 지급
  - 장제비(적립금고) : 가입자의 사망 시 지급

## 6

###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급여
  - 노령연금(적립금고) :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총액 + 이자(연 8%)
    - 추가급여제도 : 노령일시급여 \* 0.33% \* 보험료납부 년 수에 기초한 일시금 지급(최대 100,000 rupees까지)
    - 연기급여 : 노령급여과 동일하게 산정됨
    - 공무원도 월 연금급여 수급(최대 기본급의 100% 까지)
    - 대출제도(적립금고) : 최대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은 대출의 성격에 따라 상이
    - 이자율조정 : 적립금고이사회에서 기금의 연간수익에 기초하여 이자율 조정
  - 노령수당(사회부조)
    - 월 2,000 rupees 지급; Rautes, Chepang 등 소수 민족들에게는 월 1,000 rupees 지급
    - 지급조정 : 연금은 4개월마다 지급됨
- 장애급여
  - 장애보조금(개인사고보험, 적립금고)
    - 영구장애에 대하여 65,000 rupees의 일시금 지급
    - 부분장애 : 결정된 장애등급별로 10,000~25,000 rupees의 일시금 지급
  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

- 영구장애인 경우 월 2,000 rupees 지급; 부분장애인 경우 월 600 rupees 지급
- 지급조정 : 연금은 4개월마다 지급됨

○ 유족급여

- 유족급여(적립금고)
  - 근로자 및 사용자의 총 납부액 및 이자에서 이전 인출금액을 뺀 금액을 지정된 유족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; 지정된 유족이 한명 이상인 경우 균분 지급
  - 이자율은 연 8% (2017년 기준)
  - 추가급여 : 공무원은 150,000 rupees 또는 군인 및 경찰은 40,000~75,000 rupees 일시금 지급
  - 이자율조정 : 적립기금이사회에서 연간 기금수익에 따라 이자율 조정
- 유족보조금 : 200,000 rupees의 일시금 지급
- 유족사회연금(미망인 수당, 사회부조, 자산조사)
  - 60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월 2,000 rupees 지급
  - 지급조정 : 연금은 4개월마다 지급됨
- 장제비(적립금고) : 40,000 rupees 일시금

---

## 7 관리운영기관

---

- 근로자 적립기금(Employees' Provident Fund)
  - 재정부의 전반적 감독하의 자치기관
  - <http://www.epfinepal.com>
- 재정부(Ministry of Finance)
  - 이사회에 의해 경영되며 적립기금제도를 관리하고 보험료 징수
  - <http://www.mof.gov.np>
- 연방정부 총무처(Ministry of Federal Affairs and General Administration)
  - 사회부조제도 관리
  - <http://www.mof.gov.np>

<2018년 ISSA 자료>